

## 대법원의 범인식별의 신빙성 기준에 대한 분석적 고찰

강 우 예<sup>†</sup>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부

범인식별의 신빙성 판단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은 기존의 사회과학적 연구성과를 일부 반영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우리 실무와 학계는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보다 섬세한 대안제시를 위한 노력을 개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부정확한 범인식별은 인간 기억의 한계라는 비제도적 요인과 범인식별절차의 부적절한 구성이라는 제도적 요인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이 범인식별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재량은 지나치게 자유로운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법원의 범인식별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기준은 중요한 요건과 기타 고려요소를 구분하고 있음에도 이의 구분과 활용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심지어, 대법원은 범인식별의 신빙성 문제와 사건 전체의 일반적인 신빙성 문제를 혼돈하는 논증을 여러 차례 했다. 대법원이 특정 사실요소에 지나친 무게를 두어 손상된 범인식별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범인식별절차를 운영하는 데 지나친 암시적 행위를 개입시킨 경우 다른 특별한 정황이 없는 경우 증거능력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범인식별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항목을 포괄하고 망라한 기준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법원이 특정 사건에서 범인식별의 증명력과 증거능력 판단을 할 시 균형잡힌 형량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을 지녀야 한다. 나아가, 해당 기준은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과 지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은 수사기관이 해당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어 범인식별의 신빙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요어 : 목격자 범인식별, 신빙성, 증명력, 증거능력, 암시

---

<sup>†</sup> 교신저자 : 강우예,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부

## 서론

근래, 목격자 범인식별 진술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목격자 범인식별 진술의 증명력이 실제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심리학, 범죄학 등 실증과학계에서는 목격자의 범인식별을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신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심지어, 이노선스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를 중심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 법원의 오판에 가장 많은 기여를 했을 것으로 추론되는 요인이 목격자 범인식별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죄확정(guilty conviction) 후 DNA 분석을 통하여 무죄방면된 사건의 70% 이상이 잘못된 범인식별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sup>1)</sup>

범인식별의 신빙성 판단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은 이러한 연구성과를 일부 반영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우리 실무와 학계는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보다 섬세한 대안제시를 위한 노력을 개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부정확

한 범인식별은 인간 기억의 한계라는 비제도적 요인과 범인식별절차의 부적절한 구성이라는 제도적 요인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포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상호간에 중첩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리학을 비롯한 실증과학계는 범인식별과 관련하여 정확성 유무라는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sup>2)</sup> 범인식별의 정확성 문제는 법원절차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개념으로 포착된다. 신빙성 개념은 법관의 자유심증하에 판단되는 목격자 범인식별 진술의 증명력과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sup>3)</sup> 나아가, 범인식별

1) Garrett, Judging Innocence, 108 Colum. L. Rev. 55, 78 (2008)(무죄방면된 200개의 사건 중 158개, 즉 79%가 범인식별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Samuel R. Gross, Kristen Jacoby, Daniel J. Matheson, Nicholas Montgomery & Sujata Patil, Exonerations in the United States, 1989 Through 2003, 95 J. Crim. L. & Criminology 523, 544 (2005)(무죄 방면된 강간 사건 중 88% 및 무죄 방면된 살인사건의 50%가 잘못된 범인 식별절차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Samuel R. Gross, Loss of Innocence: Eyewitness Identification and Proof of Guilt, 16 J. Legal Stud. 395, 396 (1987)(유죄확정 된 뒤 파기된 사건의 75%에서 잘못된 범인식별이 요인이 된 사실을 제시했다).

2)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 우소연·조은경, 목격자의 범인식별 절차에서 식별 전 지시와 순차적 제시방식 유형에 따른 식별 정확성, 한국범죄심리학회 제26권 제4호 (2012); 허성호·김지영·김기범, 범인식별과정에서의 정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차 및 상황변인 분석, 한국공헌행정학회보 제36권 (2009) 김지영·김시업, 목격자 증언의 정확성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6).

3)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 홍기원·이보영, 목격증언의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 법학연구 제43권 (2011); 이성기, 목격자 범인식별진술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서의 비디오 라인업, 경찰학연구 제10권 제2호 (2010); 이훈재, 경찰수사에서 범인식별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9권 제3호 (2010); 류여해, 범인식별절차의 한계성: 대법원 2009. 06. 11. 선고 2008도12111 강제추행치상 판결, 경찰학논총 제4권 제1호 (2009); 조광훈,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진술 및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2008); 백승민, 형사절차에 있어서 범인식별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102호 (2008); 박종선, 목격자진술에 의한 범인식별의 신용성 평가, 중앙법학 제9권 제3호 (2007); 심희기,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준

진술의 증명력이 현저히 낮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현출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 사용되어 하는 것이 증거능력 개념이다.

본 글은 범인식별과 관련된 이러한 여러 개념들을 중심으로 우리 대법원 판결들의 변화와 의미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무엇보다, 우리 대법원이 범인식별절차의 신빙성 판단을 위하여 제시해온 요건 및 요소들을 성질과 형상에 따라 분석하고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개별 사건에 있어 범인식별절차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우리 대법원의 접근법이 적절했는지가 자연히 드러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목격자 범인식별의 신빙성과 관련된 논의가 보다 섬세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 부정확한 범인식별의 요인

#### 평가자 요인(estimator variables)

기억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형될 수 있다는 데에서 목격자 범인식별의 신빙성과 관련한 문제의 1차적 요인이 있다. 인간의 기억은 비디오 녹화물과는 달리 지각한 것을 그대로 저장하지 않는다. 기억은 편견(bias), 지각의 실패(failures in perception) 및 기타 심리적·인지적인 개입 요인(intervening events)들에 의하여 항상 새롭게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친다. 지각

한 것에 대한 재구성은 지각, 저장, 재생에 이르는 기억과 관련한 어떤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기억이 단순한 재구성을 넘어 사실을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sup>4)</sup>

피해자나 제3자가 범죄를 목격할 시 범죄자를 선명히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 진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이다. 예를 들어, 거리의 근접성, 조명의 밝기, 등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안면에 대한 정확한 인식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sup>5)</sup> 특히, 피해자는 피해상황에서 매우 높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각 작용이 왜곡될 수 있다.<sup>6)</sup> 목격자와 범죄자의 인종의 차이 또한 정확한 식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sup>7)</sup> 흥기가 등장한 경우 목격자의 지각과 기억의 에너지가 흥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범죄자의 얼굴이나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

4) Elizabeth F. Loftus, Eyewitness Testimony (1979).  
5) Note, Did Your Eyes Deceive You? Expert Psychological Testimony on the Unreliability of Eyewitness Identification, 29 Stan. L. Rev. 969, 970 (1977).  
6) Gary L. Wells & Elizabeth A. Olson, Eyewitness Testimony, 54 Ann. Rev. Psychol. 277, 282 (2003).  
7) Christian A. Meissner & John C. Brigham, Thirty Years of Investigating the Own-Race Bias in Memory for Faces: A Meta-Analytic Review, 7 Psychol. Pub. Pol'y & L. 3, 5 (2001)(조사된 샘플의 80%가 안면인식에 있어 인종편견 따른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Wells & Olson, supra note 6, at 280-81; Gary L. Wells & Elizabeth A. Olson, The Other-Race Effect in Eyewitness Identification: What Do We Do About It?, 7 Psychol. Pub. Pol'y & L. 230, 231 (2001)(백인 목격자가 흑인 목격자보다 잘못된 범인식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수하여야 할 절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도7033 판결], 고시연구 제32권 제5호 (2005); 민영성, 목격자에 의한 범인식별진술의 적정한 신용성평가를 위한 담보방법, 저스티스 제79권 (2004).

하지 못하는 경우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sup>8)</sup> 목격자가 기억의 재편집의 일종으로 경험하는 무의식적인 전이(unconscious transference) 현상으로 인하여, 사건현장에 있었던 제3자가 가해자로 오인 지목되는 경우 또한 발생할 수 있다.<sup>9)</sup>

이외에도 목격자의 성격(witness characteristics), 범죄자의 특성(characteristics of perpetrator), 주목의 정도(degree of attention), 범인식별 시 지목의 확실성의 수준(level of certainty demonstrated at the confrontation), 목격 당시 소요된 시간(duration), 범죄와 범인식별 간의 경과시간(the time between the crime and the confrontation)이 평가자 요소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항<sup>10)</sup>들이다.

#### 제도적 요인(system variables)

범인식별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억의 왜곡 현상 자체 보다 이를 초래하는 범인식별 절차의 부적절한 구성이 보다 많은 정

점의 대상이 되어왔다. 웰스(Wells)와 올슨(Olson)은 부적절한 범인식별절차의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수사관이 목격자에 대해 제시한 지침(instruction to the witness), 단체면접의 제시방법(presentation of the lineup), 단체면접의 구성 형태(lineup construction), 혐의자에 대한 집단면접 집행자의 인식정도(lineup administrator's knowledge of the suspect), 목격자에 대한 집단면접 집행자의 피드백(the lineup administrator's feedback to the witness)들을 제시하고 있다.<sup>11)</sup>

우선, 범인식별절차에 참가하는 목격자에 대한 수사관의 지침이 일정한 편향(bias)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집단면접(lineup)을 위해 서 있는 용의자 후보들 중에 진범이 있다는 점을 암시하여 사실상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sup>12)</sup> 진범이 존재하지 않는 집단면접을 가상의 상황으로 설정한 연구에 따르면, 진범이 없을 수도 있다는 지침이 제시된 경우 목격자가 무고한 자를 선택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진다.<sup>13)</sup>

집단면접 참가자들이 한 명씩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 목격자가 각각의 참가자들에게 집중할 수 있으므로 범인식

8) Wells & Olson, *supra* note 6, at 282; Kerri L. Pickel, The Influence of Context on the "Weapon Focus" Effect, 23 Law & Hum. Behav. 299, 299, 301(1999); Nancy Mehrkens Steblay,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Weapon Focus Effect, 16 Law & Hum. Behav. 413, 414, 417 (1992).

9) See, e.g., Elizabeth F. Loftus, Unconscious Transference in Eyewitness Identification, 2 Law & Psychol. Rev. 93, 96 (1976)(5명의 복수면접(line-up) 시 가해자가 실제로 등장하는 경우 목격자는 평균 84%의 빈도로 정확히 가해자를 지목했지만, 실제 가해자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 무고한 제3자(an innocent bystander)를 지목하는 경우도 60%에 달했다).

10) See, e.g. State v. Henderson, 208 N.J. 208, 27 A.3d 872 (2011).

11) Wells & Olson, *supra* note 6, at 285.

12) Michael R. Leippe, Donna Eisenstadt & Shannon M. Rauch, Cueing Confidence in Eyewitness Identifications: Influence of Biased Lineup Instructions and Pre-Identification Memory Feedback under Varying Lineup Conditions, 33 Law & Hum. Behav. 194, 196 (2009).

13) Wells & Olson, *supra* note 6, at 286-87; Leippe, *supra* note 12, at 196; Roy S. Malpass & Patricia G. Devine, Eyewitness Identification: Lineup Instructions and the Absence of the Offender, 66 J. Applied Psychol. 482, 485 (1981).

별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또한 존재한다. 즉, 집단면접 참가자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경우, 목격자는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범죄자와 참가자를 대조하기보다는 참가자들을 비교하여 그 중 범죄자와 가장 유사한 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sup>14)</sup>

또한, 범인식별절차를 집행하는 자가 목격자의 지목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한 경우 목격자의 관점이 왜곡될 수 있다. 범인식별절차의 지목에 따르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는 경우에는 목격자는 특히 소급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높은 정도로 확신한다는 점이 보고되었다.<sup>15)</sup> 사실, 목격자의 내적인 확신의 정도와 목격자의 실제적인 지목 간에는 매우 낮은 상관관계만이 있다는 연구결과 또한 존재한다.<sup>16)</sup>

통상, 집단면접에 참가하는 자는 진범과 대체로 닮은 자가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만일, 집단면접에서 단 한 명의 참가자가 진범에 대한 목격자의 사전 묘사와 일치하는 경우, 목격자는 해당 참가자를 지목할 가능성은 높

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sup>17)</sup>

이외에도, 목격자와 범인식별절차의 집행관 양자 모두의 사전 무인지(double blind administration), 단독면접과 범행간의 경과시간(showup requirement), 목격자의 다른 범죄자 지목 이력(other identification made), 목격자 진술의 기록(recording confidence) 등이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될 수 있다.<sup>18)</sup>

## 대법원의 범인식별의 신빙성 판단

### 개요

이미 오랫동안 우리 대법원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목격자의 범인식별과 관련한 진술의 신빙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수사기관이 범인식별절차에서 행한 부적절한 행위가 목격자에게 무의식적인 암시를 줄 수 있다는 점 또한 이미 대법원의 판결에 반영된 바 있다.<sup>19)</sup>

무엇보다, 우리 대법원은 범인식별의 법리를 증명력 문제로 다루고 있다. 즉, 법관의 재량으로 범인식별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판결마다 빠뜨리지 않고 범인식별 절차의 핵심이 되는 사항들을 제시해왔다. 또한, 대법원은 범

14) Wells & Olson, *supra* note 6, at 288; Amina Memon & Fiona Gabbert, Unravelling the Effects of Sequential Presentation in Culprit-Present Lineups, 17 *Applied Cognitive Psychol.* 703, 709 (2003).

15) Amy Bradfield Douglass & Nancy Steblay, Memory Distortion in Eyewitnesses: A Meta-Analysis of the Post-Identification Feedback Effect, 20 *Applied Cognitive Psychol.* 859, 860 (2006); Gary L. Wells & Amy L. Bradfield, "Good, You Identified the Suspect": Feedback to Eyewitnesses Distorts Their Reports of the Witnessing Experience, 83 *J. Applied Psychol.* 360, 363 (1998).

16) Amy Bradfield Douglass & Nancy Steblay, Memory Distortion in Eyewitnesses: A Meta-Analysis of the Post-Identification Feedback Effect, 20 *Applied Cognitive Psychol.* 859, 860 (2006).

17) Gary L. Wells, Mark Small, Steven Penrod, Roy S. Malpass, Solomon M. Fulero & C.A.E. Brimacombe, Eyewitness Identification Procedures: Recommendations for Lineups and Photospreads, 23 *Law & Hum. Behav.* 603, 632 (1998).

18) Henderson, 208 N.J., at 248-61.

19)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인식별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사항들을 개별 사건별로 제시하는 접근법 또한 택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각 사건별로 대법원이 범인식별의 신빙성 평가를 위하여 활용한 요소들을 분석하고 분류하여 그 성격과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고자 했다.

#### 범인식별 절차의 준수 요건

우리 대법원은 2000도4946 판결에서 범인식별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단체면접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용의자를 포함하여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하여 범인식별을 진행한 경우 범인식별과 관련한 목격자 진술은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한” 그 증명력이 상당히 높다고 하고 있다.<sup>20)</sup>

반면, 단독면접에 의한 범인식별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단독면접의 전형적인 예는 목격자와 용의자를 직접 만나게 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용의자 1명의 사진제시<sup>21)</sup>를 통하여 목격자가 범인식별을 하도록 하는 방법 또한 단독면접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대법원은 이 두 가지 종류의 단독면접 방식에 기초한 범인식별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22)</sup>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목격자와 용의자 간의 단독면접 후 단체면접이 실시

된 경우의 범인식별 결과 또한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sup>23)</sup>

이외에도 대법원은 2003도7033 판결에서 범인식별절차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우선,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 진술 내지 묘사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나아가, “대질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sup>24)</sup> 대법원은 동 요건들이 단체면접뿐만 아니라 단독면접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sup>25)</sup> 실제, 대법원 2007도5210 판결에서는 사전에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해 기록된 목격자 진술 내지 묘사와 이후 지목된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격자의 범인식별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26)</sup>

#### 범인식별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적 요소

주의할 것은 대법원은 목격자 식별절차에서 준수해야 할 요건들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로 목격자의 용의자 식별의 신빙성이 없어진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즉, 대법원은 목격자 식별에 있어 정황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목격자 식별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0도4946 판결에서

20)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21) 범인식별절차에 적용되는 요건들은 사진제시뿐만 아니라 가두식별 및 동영상 제시 등의 범인식별 방법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10 판결 참조.

2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23)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587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10 판결.

24)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25)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26)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10 판결.

목격자의 범인식별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sup>27)</sup>

우선, 대법원은 범인식별 과정에 있었던 특정 정황이 범인식별 절차의 하자를 치유하는 것으로 보는 접근을 택하고 있다. 우선, 단독 면접이라고 할지라도 목격자가 사건 전에 용의자와 안면이 있었던 경우에는 범인식별의 신빙성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다.<sup>28)</sup> 최근 대법원은 사건 직후 범행 현장이나 부근에서 목격자와 용의자를 단독 면접시키는 경우의 신빙성도 예외적으로 확보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기서 대법원은 목격자의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즉각적인 대면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sup>29)</sup>

이에 한발 더 나아가, 대법원은 범인식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다른 증거의 신빙성에 의하여 범인식별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또한 회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2003도7033 판결에서는 사진 단독면접을 통한 목격자의 범인식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화기록에 비추어 목격자와 통화한 자가 용의자라는 사실에 대한 추정이 성립하는 경우 해당 범인식별에 대하여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었다.<sup>30)</sup> 또한, 대법

원 2006도4587 판결에서는 단독면접 후 단체 면접을 실시한 범인식별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용의자인 피고인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범인식별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두었다.<sup>31)</sup>

### 신빙성을 하락시키는 요소

대법원은 범행식별 절차에서 발생한 정황들이 신빙성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판결을 다수 제시했다. 우선,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신뢰도가 낮은 수사과 결합되는 경우 범인식별의 신빙성이 하락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 2000도4946 판결에서는 “수사기관이 잘못된 단서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하고 신병을 확보”한 후 일대일로 대면하도록 한 것은 범인식별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당시 “이름 끝자가 동일하여 자세히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와 같이 진술했다”고 진술을 반복했다. 사실, 사건에서는 범인식별의 정확성 여부와는 별개로 목격자의 전화 내역 조회와 증언을 통하여 피고인이 마약판매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동 판결에서 대법원이 다른 증거의 신빙성을 기초로 하자 있는 목격자 범인식별의 신빙성을 인정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31)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587 판결. 주의할 것은 대법원 2006도4578 판결에서는 목격자가 용의자를 20분간 정면에서 정확히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특정 정황이 범인식별절차의 하자를 치유한다고 기술한 대법원 판결들에서도 다른 정황적 사실들 또한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목격자 범인식별의 신빙성 문제를 범죄사실 입증 신빙성 문제로 대체하는 태도를 여러 번 보여준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27)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28)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29)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30)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동 사건은 목격자가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명 끝자리와 목격자와 통화된 자의 휴대폰 가입자 명의 끝자리가 같다는 점에 착안하여 단독 사진 면접을 실시한 결과를 인정한 것이다. 목격자는

는 점이 지적되었다. 대법원 2007도1850 판결에서는 불확실한 단서, 즉 목격자가 당시 범죄인이 눈이 초점이 없었고 본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사건발생 장소 인근에서 본드를 흡입한 적이 있다는 용의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단독면접의 범인식별절차에 투입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sup>32)</sup>

또한, 대법원은 목격자의 범인식별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간의 관계를 지적한 판례들도 내어 놓은 바 있다. 대법원은 2003도7033 판결에서 목격자가 범인식별 절차에서 행한 진술을 이후 번복한 사실이 범인식별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기술한 바 있다.<sup>33)</sup> 이어, 대법원은 2007도1850 판결에서 목격자들의 범인식별 절차 전 기술한 용의자와 지목된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불일치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목격자는 용의자의 머리모양이 범인과 동일하다는 것 이외의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sup>34)</sup>

대법원은 목격 당시의 정황이 신빙성을 떨어뜨린다는 점 또한 판결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0도4946 판결에서는 목격자가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용의자를 목격한 경우 또한 관련 있는 사실로 포착하고 있다.<sup>35)</sup> 대법원 2007도1850 판결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5개월 및 3개월가량 경과한 뒤 이루어진 범인식별은 기억의 감퇴로 인하여 부정확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과 대안

### 범인식별 진술의 증명력과 증거능력

우리 대법원이 목격자 범인식별 진술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빙성, 즉 증명력 문제로만 다루고 있다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의 암시적 행위가 개입되어 위법성을 띤 범인식별절차의 구성을 가변적인 증명력 판단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3도7033 판결은 범인식별절차에 이르는 과정의 적법성이 의심이 되는 경우이다. 동 판결에서는 목격자가 피고인을 지목한 것은 사진 단독면접을 통해서였다. 대법원 2003도7033 사건에서 목격자는 피고인을 노상에서 밤 22:55에 잠시 만나 금전과 마약을 주고받은 것이 전부이다. 목격자는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던 자와 다르며 심지어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적도 있다. 여기에 이르는 과정은 검찰이 피고인과 관련된 부정확한 추측성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sup>36)</sup> 또한, 목격자의 범인식별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 현저히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 대법원 2000도4946 판결에서는 피해자들이 범인이 2인이라고 진술했으나 이후에 이를 번복했으며,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첨부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복사된 사진을 보고 범인이라고 지목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0도4946 사건에서 목격자1은 사건발생 직후 용의자가 20~30대 남성으로서

32)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33)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34)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동 판결은 단독 대면이라는 범인식별절차의 하자에 덧붙여 목격자의 인지의 정확도가 문제될만한 사실들을 비교적 충실하게 나열하고 있다. 동 판결은 정황적 요인을 범인식별의 신빙성 부인에 사용한 몇 안되는 판결이다).

35)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36)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키는 180cm에 둥근 얼굴이라고 했으나 피고인의 키는 173cm이었고 인상착의 또한 일치하지 않았다. 목격자2는 사건발생 직후 용의자 대면 전에는 용의자가 10대 후반 정도로 보이고 키는 167cm 정도이며 착하고 깔끔한 인상이라고 진술했으나 이외의 상세한 진술이 없었다. 이러한 정도의 목격자의 범인식별 진술들은 사실판단을 위한 증거로서 자격을 박탈하기에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다른 무엇보다, 형사절차에서는 목격자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는 최대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목격자의 범인식별 진술을 증명력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개별 사건의 구체성을 면밀히 고려할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범인식별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다시 회복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은 범인식별절차를 사실판단의 혼돈이 양산되는 지점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후 배심원들이 사실심 판단을 하게 됨으로서 선별된 증거를 법정에서 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사실, 목격자가 해당 범인을 공판정에서 범인으로 지목하는 행위는 사실판단자에 매우 강한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다.<sup>37)</sup>

문제해결 출발은 대법원이 목격자 범인식별 절차의 정당한 구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제시해왔다는 사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인상착의가 유사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하게 하는 단체 면접을 범인식별 절차의 원칙으로 명시했다. 이어, 대면 전 사전 접촉 금지, 범인인 인상착의에 대한 사전 기록, 대질과정과 결과의 서면화와 같은 항목을 필수적인 고려요소로서 적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반복하여 제시하는 이 범인식별절차의 요소들을 위반했을 시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별도로 고려해야 할 정황적 요소가 없는 경우에 범인식별절차의 기본적인 요건이 준수되지 않았다면 해당 범인식별 진술을 법원절차에 현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목격자의 범인의 목격, 기억, 재생 과정에서 현저하게 정확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있는 경우 또한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수사기관이 범인식별절차에서 암시적이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에만 증거능력 배제를 고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본 글 앞에서 목격자가 범인을 목격한 시점의 시각, 소요시간, 조명, 거리, 흥기를 사용한 위협, 인종 내지 민족의 차이, 범인식별까지 시간의 경과 등은 범인식별의 정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sup>38)</sup> 사실, 유전자감정 증거, 필적감정 증거 등과 같은 과학적 증거 또한 수사기관의 위법한 절차위반과는 별개로 증명력이 낮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sup>39)</sup> 따라서, 해당 목격자의 진술의 부정확성을 초래할 요인의 비

37) 어떤 형태 건 목격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경우는 피고인 내지 변호인 측에서 항변하기가 매우 힘들다. See, e.g., Thomas R. Braun, Anna Restovich Braun, Basic Strategies and Considerations in Defending Homicide Cases, 2014 WL 1573046, at 2.

38) 본 글 앞의 ‘2. 부정확한 범인식별의 요인’ 중 ‘(1) 평가자 요인’ 부분 참조.

39) 대법원 2006. 7. 7. 선고 2005도6115 판결;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 황만성,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능력,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2007, 가을호).

중이 지나치게 높을 때 법원이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선택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 대법원은 2008도12111 판결에서 사건 현장에서 장소적 시간적으로 근접한 단독면접은 “허용”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08도12111 판결은 범인식별과 관련하여 마치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여부를 다루는 것이 쟁점의 일부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이는 우리 대법원이 목격자의 범인식별 진술을 단지 증명력 수준에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증거능력 혹은 허용성 차원에서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징표이다.

####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현재, 우리 법원은 범인식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는 않다. 즉, 우리 대법원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와 무의식적인 암시를 줄 가능성이 있는 범인식별절차가 원인이 되어 범인식별 진술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수사기관이 정당하지 못한 범인식별 절차를 구성한 경우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할 경우, 수사기관에 범인식별 절차를 정당하고 적절히 구성하게 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된다.<sup>40)</sup> 우리 대법원도 부적절한 범인식별절차가 목격자에게 가할 수 있는 “무의식적인 암시의 가능성”을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다.<sup>41)</sup>

40)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위법수사의 방지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2011), 1126면 참조.

이것은 대법원이 범인식별절차의 정당한 구성, 즉 적법절차가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특정 요소의 지나친 가중 고려 지양

대법원은 2008도12111 판결에서 특정 정황 요소가 확보되면 범인식별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어 신빙성을 회복한다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내어 놓았다. 동 판결은 범행 현장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범인식별에 거의 절대적인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논증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 종래 우리 대법원이 목격자 범인식별 진술을 종합적이 사실고려가 내용인 증명력 문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일도양단식 판단이 기저가 되는 증거능력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대법원 2008도12111 판결은 상당히 예외적인 접근이다.

동 사건에서 범행이 일어나서 피해자가 범죄자를 목격한 시점은 새벽 4시 30분이었다. 게다가, 범행당시 범죄자는 챙이 있는 야구모자를 쓰고 있었다. 피해자는 범죄자가 자신의 가슴을 뒤에서 잡았을 때와 범죄자가 자신을 올라타고 폭행을 가할 때 똑똑히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식과 기억이 명료하고 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가 이미 보여주고 있다.<sup>42)</sup>

4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587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42) Wells & Olson, *supra* note 8, at 282; Pickel, *supra*

주목해야 할 점은 대법원이 보여준 특정 사실 요소에 편향된 접근은 단지 범인식별과 직접 관련된 것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핀대로, 대법원은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sup>43)</sup>과 통화기록에 비추어 목격자와 통화한 자가 용의자라는 사실<sup>44)</sup>을 목격자 범인식별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정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범인식별 절차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우리 대법원은 범인식별이 가져올 수 있는 오판 가능성에 대해서 둔감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대법원이 범인식별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루는 태도는 혼돈과 편향에 문을 활짝 열어주는 접근법이라고 비판 받아야 한다.

#### 정황적 요건 고려의 체계화 - 포괄적 지침서 작성

목격자 범인식별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목격자 범인식별의 정확성과 적절성에도 있지만 목격자 범인식별에 대한 법판단자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요건과 정황요소들의 적절한 활용에 있다. 아쉬운 것은 우리 대법원이 범인식별의 신빙성 판단 시 정황적 요건을 원칙과 기준에 따라 활용한다는 증거를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즉, 대법원은 개별 사건에 나타난 어떠한 정황 요소가 범인식별의 신빙성 판단을 위하여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note 8, at 299-301; Steblay, supra note 8, at 414-417.

43)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44)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587 판결.

심지어, 대법원은 범인식별의 신빙성 판단과 범죄행위 발생과 관련한 일반적 신빙성 판단을 혼돈하고 있다.<sup>45)</sup>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범인식별과 관련된 고려 요소들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sup>46)</sup> 이는 개별 사건마다 범인식별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고려요소 간의 우열이 일정정도 사전에 정해질 필요가 있으며 어떠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지가 가능한 망라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범인식별 절차의 준수 요건들을 적법절차와 연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인식별 절차가 암시적인 성격을 지니게 하는 준수요건들 및 요소들과 기타 신빙성 내지 증명력 판단을 위한 정황적 요소를 구분해야 한다. 이미 언급한 대로, 범인식별 절차가 지나치게 암시적인 성격을 지닐 경우 별도의 정황이 없다면 증거능력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덧붙여, 준수요건 및 기타 정황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증명력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

## 결론

대법원이 범인식별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재

45)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587 판결.

46) 이에 대해서는 앞의 '2. 부정확한 범인식별의 요인' 참조; See, e.g., Henderson, 208 N.J., at 248-72; see also Attorney General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Conducting Photo and Live Lineup Identification Procedures, (April 18, 2001) available at <http://www.state.nj.us/lps/dcj/agguide/photoid.pdf> (lasted visited at Jul. 10th, 2014).

량은 지나치게 자유로운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법원의 범인식별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기준은 중요한 요건과 기타 고려 요소를 구분하고 있음에도 이의 구분과 활용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심지어, 대법원은 범인식별의 신빙성 문제와 사건 전체의 일반적인 신빙성 문제를 혼돈하는 논증을 여러 차례 했다. 대법원이 특정 사실요소에 지나친 무게를 두어 손상된 범인식별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범인식별절차를 운영하는 데 지나친 암시적 행위를 개입시킨 경우 다른 특별한 정황이 없는 경우 증거능력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 편향이나 과실로 인한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목격자의 기억을 신뢰할 수 없는 중대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해당 진술을 법원에 현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준 설정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앞서서도 제시했듯이 국·내외의 실증적 연구결과는 목격자의 기억에 깊은 신뢰를 줄 수 없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향후, 이와 관련한 우리 학계의 실증적 연구가 보다 풍부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범인식별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항목을 망라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법원이 특정 사건에서 범인식별의 증명력과 증거능력 판단을 할 시 균형잡힌 형량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을 지녀야 한다. 나아가, 해당 기준은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과 지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은 수사기관이 해당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우

선적인 초점을 맞추어 범인식별의 신빙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지영·김시업 (2006). 목격자 증언의 정확성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민영성 (2004). 목격자에 의한 범인식별진술의 적정한 신용성평가를 위한 담보방법, 저스티스, 제79권
- 박종선 (2007). 목격자진술에 의한 범인식별의 신용성 평가, 중앙법학, 9(3).
- 백승민 (2008). 형사절차에 있어서 범인식별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102호
- 류영해 (2009). 범인식별절차의 한계성: 대법원 2009. 06. 11. 선고 2008도12111 강제추행 처상 판결, 경찰학논총, 4(1).
- 심희기 (2005).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 대상판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도7033 판결], 고시연구, 32(5).
- 우소연·조은경 (2012). 목격자의 범인식별 절차에서 식별 전 지시와 순차적 제시방식 유형에 따른 식별 정확성, 한국범죄심리학회, 26(4).
- 이성기 (2010). 목격자 범인식별진술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서의 비디오 라인업, 경찰학연구, 10(2).
- 이훈재 (2010). 경찰수사에서 범인식별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9(3).
- 조광훈 (2008).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진술 및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18 (1).

- 허성호 · 김지영 · 김기범 (2009). 범인식별과정에서의 정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차 및 상황변인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 36권
- 홍기원 · 이보영 (2011). 목격증인의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 법학연구 제43권
- Attorney General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Conducting Photo and Live Lineup Identification Procedures, (April 18, 2001).
- Braun, Thomas R. & Braun, Anna Restovich, Basic Strategies and Considerations in Defending Homicide Cases, 2014 WL 1573046.
- Douglass, Amy Bradfield & Steblay, Nancy, Memory Distortion in Eyewitnesses: A Meta-Analysis of the Post-Identification Feedback Effect, 20 Applied Cognitive Psychol. 859 (2006).
- Garrett, Brandon L., Judging Innocence, 108 Colum. L. Rev. 55, 78 (2008).
- Gross, Samuel R., Jacoby, Kristen, Matheson, Daniel J., Montgomery, Nicholas & Patil, Sujata, Exonerations in the United States, 1989 Through 2003, 95 J. Crim. L. & Criminology 523 (2005).
- \_\_\_\_\_, Loss of Innocence: Eyewitness Identification and Proof of Guilt, 16 J. Legal Stud. 395 (1987).
- Leippe, Michael R., Eisenstadt, Donna & Rauch, Shannon M., Cueing Confidence in Eyewitness Identifications: Influence of Biased Lineup Instructions and Pre-Identification Memory Feedback under Varying Lineup Conditions, 33 Law & Hum. Behav. 194 (2009).
- Loftus, Elizabeth F., Eyewitness Testimony (1979).
- \_\_\_\_\_, Unconscious Transference in Eyewitness Identification, 2 Law & Psychol. Rev. 93 (1976).
- Malpass, Roy S. & Devine, Patricia G., Eyewitness Identification: Lineup Instructions and the Absence of the Offender, 66 J. Applied Psychol. 482 (1981).
- Meissner, Christian A. & Brigham, John C., Thirty Years of Investigating the Own-Race Bias in Memory for Faces: A Meta-Analytic Review, 7 Psychol. Pub. Pol'y & L. 3 (2001).
- Memon, Amina & Gabbert, Fiona, Unravelling the Effects of Sequential Presentation in Culprit-Present Lineups, 17 Applied Cognitive Psychol. 703 (2003).
- Note, Did Your Eyes Deceive You? Expert Psychological Testimony on the Unreliability of Eyewitness Identification, 29 Stan. L. Rev. 969 (1977).
- Pickel, Kerri L., The Influence of Context on the "Weapon Focus" Effect, 23 Law & Hum. Behav. 299 (1999).
- Steblay, Nancy Mehrkens,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Weapon Focus Effect, 16 Law & Hum. Behav. 413 (1992).
- Wells, Gary L. & Olson, Elizabeth A., Eyewitness Testimony, 54 Ann. Rev. Psychol. 277 (2003).
- \_\_\_\_\_, The Other-Race Effect in Eyewitness Identification: What Do We Do About It?, 7 Psychol. Pub. Pol'y & L. 230 (2001).
- \_\_\_\_\_, & Amy L. Bradfield, "Good, You Identified the Suspect": Feedback to Eyewitnesses Distorts Their Reports of the Witnessing Experience, 83 J. Applied Psychol. 360 (1998).

\_\_\_\_\_, Small, Mark, Penrod, Steven,  
Malpass, Roy S., Fulero, Solomon M. &  
Brimacombe, C.A.E., Eyewitness Identification  
Procedures: Recommendations for Lineups and  
Photospreads, 23 Law & Hum. Behav. 603  
(1998).

1 차원고접수 : 2014. 02. 13.

심사통과접수 : 2014. 03. 03.

최종원고접수 : 2014. 03. 07.

## Analyses of Korean Supreme Court's Reliability Standards for Eyewitness Testimony

Kang, Wu Ye

Korea Maritime&Ocean University, Law Division

Korean supreme court's reliability standards for eyewitness testimony have not fully reflected researches of social science. Now, it is time for our practitioner and theorists to make efforts to suggest detailed alternative resolutions, as to the issues of accuracy of eyewitness testimony. Basically, inaccurate eyewitness identification arises from both a systematic cause of improperly composing a process and a non-systematic cause of limits of a human memory. Currently, Korean supreme court's discretion to determine reliability of eyewitness testimony seems to go to the level of excessiveness. Most of all, the court's standards do not have criteria for considerations of substantial and other factors. Korean supreme court made confused reasoning of reliability issues regarding eyewitness testimony evidences and other general evidences. It is not accidental that the court has tried to make up for damaged reliability of eyewitness testimony by raising other evidence unrelated to eyewitness evidence. To cope with these problems, we need to introduce the system of inadmissibility of eyewitness identification evidence, if not other special circumstances or evidence pointed to another direction. To make it possible, the comprehensive standards should be drafted for a guidance of policemen, prosecutors, and courts.

*Key words* : *eyewitness identification, reliability, admissibility, probative value, suggestiveness*